

第 4 主 題 討 論 要 旨

丘秉朔(사회자) : 우리나라에서 처음 다루어진 ‘입법에 관한 통제’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권위있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韓相範(동국대) : 대체로 입법의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존제도 운영면에서의 미비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의 미비, 결함을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과 행정입법에 초점을 두고, 법률제정주체로서 형식적으로 국회라고 보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영향을 생각해 보고, 행정입법은 물론 모법의 범위안에서지만 상당한 중요성을 띠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선 법률에 관해서 보면, 상식적으로 관찰할 때 정부와 여당의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압력단체라고 하더라도 경제단체와 같이 돈이 많은 단체의 압력이 반영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법 통과와 관련해서 마스크의 영향, 위력을 지적하셨는데, 지금의 언론은 하나의 상업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의 압력단체들, 시민운동단체의 활성화로써 입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김교수님이 지적한 국민 여론의 환기, 여론에 의한 통제가 중요함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에서는 입법예고제, 또는 사전 및 사후 통제로서 영미식제도, 이것이 과감한 생각이지만 제도적 보완장치를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또 그 밖에 ‘공청회’가 현재 아직까지 형식에 그치고 있으나 제도적 운영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입법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제약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긴급입법과 같은 것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엄청나게 제약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스크이나 학계 등에서 양성화, 즉 긴급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성도 되고 견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후적 통제에서 현재 법원, 헌법위원회의 통제는 거의 전무상태이라고 지적하셨는데, 在曹·在野 등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론과 국회의 활성화에서의 문제점이 대담하고 진지하게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막강한 세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金南辰(고려대) : 입법의 통제에서 입법의 범위로서 행정입법 문제를 우선 다루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입법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행정규칙이나 행정계획의 법규성이 문제가 됩니다. 행정입법의 확대는 행정부 기능의 확대, 국회 기능의 감소에 의한 것이고, 요즘, 매우 전문적인 법이 관련단체의 제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증가되는데, 이 경우 통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행정부, 국회, 사법부 모두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즉 입법이 소수 전문가에 의해 제안되고, 다시 그 소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통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金哲洙(발표자) : 입법에 대한 통제에서는 원칙이나 한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최대권 교수가 발표하신 입법의 원칙에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는 입법권의 한계 즉 下位법규는 上位법규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에서의 제반원리에 의거하여 민주적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南辰(고려대) : 행정입법의 범위 문제는 앞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서 법규명령만 법규성을 인정하였으나, 요즘 행정규칙의 중요성 부각으로 볼 때 법규성의 논의가 진전됨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그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의 법규성과 그 통제 또한 문제이나, 그 계획이 국민에게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므로 그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사후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전 통제가 필요한데 특히 계획설정前 통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통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